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다목 중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4.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의 오염된 부분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처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수거방법, 보관방법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17조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제18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한정한다)

제6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하고,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 03-05-06 다음에 03-05-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및 비산재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10-13-00 다음에 11-0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별표 4 제3호 91-19-00 다음에 91-2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2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 가) 특정 부분품이 천연방사성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다.
- 나) 수거·운반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폐기물과 직접 코와 입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로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한 후 수거해야 한다.
- 라) 폐기물을 수거·운반하기 이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거일자	
배출자명	
운반자명	
처리자명	

별표 5 제1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장소(소각시설 반입장에서는 혼합될 수 있다)로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다만,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나)에 따른 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 (1)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
-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4) 표지판의 보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할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 가연성 폐기물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비산재

를 포집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포장을 해제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1) 작업자는 바닥재, 비산재 등으로부터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급 이상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2)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당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소각해야 한다.

나) 불연성 폐기물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관리형매립시설에서 매립해야 한다.

(1) 매립작업자는 폐기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급 이상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2) 하나의 매립시설이 사용종료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계 1,200톤 이하로 매립하여야 한다.(매립 제한량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별표 5 제4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특정 부분품이 천연방사성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다.

나) 수거·운반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폐기물과 직접 코와 입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로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한 후 수거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거·운반하기 이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거일자	
배출자명	
운반자명	
처리자명	

별표 5 제4호 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나) 보관장소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장소(소각시설 반입장에서는 혼합할 수 있다)로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다만,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보관장소를 출입할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차)(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매립해야 하고,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할 때까지 합계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하며, 매립 제한량에는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매립 작업자는 폐기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급 이상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별표 5 제4호다목2)에 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1) 가연성 폐기물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포장을 해체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 (가) 작업자는 바닥재, 비산재 등으로부터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급 이상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당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소각해야 한다.
 - (2) 불연성 폐기물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관리형매립시설에서 매립해야 한다.

- (가) 매립작업자는 폐기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급 이상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 (나) 하나의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계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매립 제한량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생략)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나. (생략)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생략)	다. ----- 제2호·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 -----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4.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제1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의 오염된 부분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수립해야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처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수거방법, 보관방법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은 작성하지 않는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제4항-----

--.

⑥ -----

----- 제5항-----
-----.

⑦ ----- 제6항까지-----

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
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 바. (생략)

<신 설>

사. (생략)

5. (생략)

제18조의2(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
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아. (현행 사목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의 확인) ①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 ⑨ (생 략)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

-----.

1. ~ 6. (현행과 같음)

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

-----.

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한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시험·분석기관)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

9. (생략)	<u>기물 소각재에 한정한다)</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